

관인생략

서울특별시

판재 22415- ²¹²

(731-6266)

1990 11 ¹⁶ ~~11~~

보존연한 10년

수신: ^{공원과장}

참조:

제목: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사항 결정

1.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사항을 별첨과 같이 결정 회
시함.

첨부: 1. 재산가격조서 ¹ 부

2. 용도폐지심의사항 통보조서 ¹ 부.

3. 기부채납 심의사항 통보조서 ¹ 부. 끝.

(의상대공기안산정)

신	공원과장	¹⁰	결재	공원과장	¹⁰
유신	11. 16	²¹²	(공)	공원과장	¹⁰
처리과	공원과		시	민정	



서울특별시

부시장 전결

No.14 종별 : 기부채납 재산 무상사용기간산정

주관부서 : 공원과

재산의 표시			감정액		무상사용년한			승인년한
물건의 표시	지목	면적(m2)	단가	금액	대부요율	년간사용료	무상사용기간	
동작구 신대방동 395	공원	10,160	150,000	1,534,160,000				7년
위치상								
건축물 5동		2,015.87						
운동시설		5개소	일괄	1,188,210,100	6%	163,342,206	7.03년	
공작물		51기	부가세포함)					
부대공사외		24식						
합계				2,722,370,100				
<p>* 우리시가 기부채납한 재산가액 : 1,148,272,100원</p> <p>○ 위금액은 공급가액(기부채납시설의 감정가) 1,043,883,730원과 부가가치세(10%) 104,388,370원이 포함된 금액으로서</p> <p>○ 재산관리부서에서는 사용허가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기 바랍.</p> <p style="text-align: right;">→ 11. 28. 이봉원 국록지서</p>								



11. 28. 이봉원 국록지서